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담당변호사 김종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판 결 선 고 2022. 9. 16.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4936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각 9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체육시설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G 골프클럽 입회금반환의무는 위 골프클럽의 인수자인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설사 위 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골프클럽을 인수한 2017. 9. 6.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업의 승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의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등 참조).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등 참조),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 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7. 1. E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1879호로 입회금 각 9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들은 2011. 8. 18.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들에게 입회금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당시 시행 중이던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9. 7. 위 전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2020. 3. 3.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E의 입회금반환채무를 전소 변론종결 후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입회금 각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전소 판결과 동일하게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그와 달리 전소 판결 이후 변경된 소송촉진법 상의 이율인 연 12%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입회금 각 9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서 소송촉진법 상의 이율이 채무자인 E와 인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전소 판결에서 적용한 연 20%의 이율이 아니라 2011. 6. 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변경된 소송촉진법 상의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9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일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위와 같이 재판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